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23
----------	-----

2016. 07. 20.(수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발의일자: 2016년 06월 29일

다. 회부일자: 2016년 06월 30일

라. 상정일자: 2016년 07월 14일

(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옥진 행정관리국장)

가. 제안이유

2016. 9. 1.자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인력을 지방
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1)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: 3,150명 → 3,135명
(△15명)
- 2)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조정(안 제2조): 2,907명 → 2,892명(△15명)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김덕환)

-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9월 1일자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15명의 인력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,150명”을 “3,13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,907명”을 “2,892명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3,135	-		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2,883	-			
3급	5		5		
4급	19	1	17	1	
5급 이하 소계	2,846	-			
전문경력관 소계	13	-			
연구직 계	12	-			
연구사 소계	12	-			
교육전문직원 계	236	-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34		23	11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2	-			
별정직 계	3	-			
5급 상당 이하 소계	3	-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,150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2,907명(제 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</p> <p>3. (생 략)</p> <p>[별표 3]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3,135명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2,892명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3]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제4조 관련)	(제4조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계</th> <th>도의회 사무처</th> <th>본청 (<small>각급학교</small>)</th> <th>교육지원청 (<small>각급학교</small>)</th> <th>공립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3,150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2,898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19</td> <td>1</td> <td>17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2,861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3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12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 소계</td> <td>12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전문직원 계</td> <td>236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</td> <td>34</td> <td></td> <td>23</td> <td>1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 <td>20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<small>각급학교</small>)	교육지원청 (<small>각급학교</small>)	공립 각급학교	총계	3,150		-			정무직 계	1		1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2,898		-			3급	5		5			4급	19	1	17	1		5급 이하 소계	2,861		-			전문경력관 소계	13		-			연구직 계	12		-			연구사 소계	12		-			교육전문직원 계	236		-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34		23	11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2				-	별정직 계	3		-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계</th> <th>도의회 사무처</th> <th>본청 (<small>각급학교</small>)</th> <th>교육지원청 (<small>각급학교</small>)</th> <th>공립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3,135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2,883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19</td> <td>1</td> <td>17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2,846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3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12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 소계</td> <td>12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전문직원 계</td> <td>236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</td> <td>34</td> <td></td> <td>23</td> <td>1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 <td>20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<small>각급학교</small>)	교육지원청 (<small>각급학교</small>)	공립 각급학교	총계	3,135		-			정무직 계	1		1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2,883		-			3급	5		5			4급	19	1	17	1		5급 이하 소계	2,846		-			전문경력관 소계	13		-			연구직 계	12		-			연구사 소계	12		-			교육전문직원 계	236		-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34		23	11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2				-	별정직 계	3		-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<small>각급학교</small>)	교육지원청 (<small>각급학교</small>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,150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2,898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5	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9	1	17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2,861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3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12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 소계	12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전문직원 계	236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34		23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2	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3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<small>각급학교</small>)	교육지원청 (<small>각급학교</small>)	공립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,135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2,883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5	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9	1	17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2,846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3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12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 소계	12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전문직원 계	236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34		23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2	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3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		
직급별	기관별	총계	도의회	본청	교육지원청	공립	직급별	기관별	총계	도의회	본청	교육지원청	공립
	사무처		(서관포)	(서관포)	(서관포)	(서관포)		사무처		(서관포)	(서관포)	(서관포)	(서관포)
5급 상당 이하 소계		3		-			5급 상당 이하 소계		3		-		

관 계 법 령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6.11.] [대통령령 제25375호, 2014.6.11., 타법개정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3.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